

의안번호	제30호
의결 년월일	2025년 4월 23일 (제328회)

심 의 의 결 사 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병훈 의원 등 7인
제출연월일	2025. 4. 9.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0호
----------	------

발의년월일 : 2025. 4. 9.

발 의 자 : 박병훈의원·김기윤의원·정옥균의원,
심정수의원·송영천의원·최명수의원,
정기수의원

1. 개정이유

금산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기존 1, 2, 3급지로 나누어 급지별 서로 상이한 요금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월 정기주차 비율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 요금 변경
- 나. 월 정기 주차면수 제한에 관한 사항
 - 비고 5. 월 정기주차면수의 한도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차장법」

금산군조례 제 호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다른 기본요금과**”를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

호 중 “**30분 이하의**”를 “**30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 5. 30><개정 2023.12.20.>

공영주차장요금표(제3조 및 제18조제2항 관련)

급 지 구 분	기본주차요금(1구획당)			추가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1일주차요금
	30분이하	45분이하	60분이하	30분	주간	야간	
1급지	400원	600원	800원	500원	50,000원	30,000원	5,000원
2급지	무료	500원	700원	500원	50,000원	30,000원	5,000원
3급지	무료	400원	600원	400원	30,000원	20,000원	4,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가. 4월 ~ 10월 08 : 00 ~ 20 : 00
 - 나. 11월 ~ 3월 09 : 00 ~ 19 : 30
3.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 급지 구분에 있어서 1급지는 금산터미널 앞 공영주차장, 2급지는 구 범원 공영주차장, 금산읍 도시지역 내, 3급지는 1·2급지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5. 월 정기 주차면수는 전체 면수의 최대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p> <p>② 법 제8조의2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의 구분에 <u>따른 기본요금과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u></p> <p>③ (생략)</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은 1급지 <u>30분 이하의</u> 요금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p>10. (생략)</p> <p>⑤ (생략)</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따른</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 ----- <u>30분</u> ----- ----- -----.</p> <p>10.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별표 1】 공영주차장요금표(제3조 및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1】 공영주차장요금표(제3조 및 제18조제2항 관련)						
급 지 구 분	기본주차요금(1구획당)			추가 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1일주차 요금	급 지 구 분	30분 이하	추가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1일주차요금
	30분 이하	45분 이하	60분 이하		30분	주간	야간					10분	주간	
1급지	400원	600원	800원	500원	50,000원	30,000원	5,000원	1급지	무료	200원	50,000원	30,000원	5,000원	
2급지	무료	500원	700원	500원	50,000원	30,000원	5,000원							
3급지	무료	400원	600원	400원	30,000원	20,000원	4,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 : 00 ~ 20 : 00 나. 11월 ~ 3월 09 : 00 ~ 19 : 30 3.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 급지 구분에 있어서 1급지는 금산터미널 앞 공영주차장, 2급지는 구법원 공영주차장, 금산읍 도시지역 내, 3급지는 1·2급지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5. 월 정기 주차면수는 전체 면수의 최대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 : 00 ~ 20 : 00 나. 11월 ~ 3월 09 : 00 ~ 19 : 30 3.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 급지 구분에 있어서 1급지는 금산터미널 앞 공영주차장, 2급지는 구법원 공영주차장, 금산읍 도시지역 내, 3급지는 1·2급지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5. 월 정기 주차면수는 전체 면수의 최대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무인관제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의 경우 정기 주차면수는 전체 면수의 최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거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8조(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주소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예산 지원액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방안
7.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8. 그 밖에 군수가 위탁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일반사무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④, ⑤ (생략)